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

2021. 12. 22.



의정부시-서울특별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경기도 의정부시(이하 “의정부시”)·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는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2020년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협약(이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기본협약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과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대형병원 및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본 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는 본 협약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021년 12월 22일



의정부시

의정부시장

안 병 용

안 병 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오 세 훈



노원구

노원구청장

오 승 록

오 승 록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사업개요)

- ① 본 협약은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협약당사자의 상생발전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협약당사자 간에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하 “이전사업”이라 한다) : “도봉면허시험장”은 노원구 상계동 807-1일원 소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하 “면허시험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전”은 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이하 “이전지”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주관한다.
 - 나. 의정부시는 서울시, 노원구의 계획수립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2. 주민편익시설 조성 :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지 인근 주민편익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한다.
 - 가. “주민편익시설”은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등에 조성하는 공공시설로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사업을 말하며, 의정부시와 서울시·노원구가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합의서는 “이전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전까지 별도로 작성한다.
 3. 장암역 환승주차장 매각 : “환승주차장”은 의정부시 장암동 159번지 일대 장암역 환승주차장을 말하며, 매각은 서울시 소유 토지 지분(장암동 159번지 8,915㎡의 지분 65/100, 장암동 164-1번지 92㎡의 지분 7541.1551/11574)(이하 “환승주차장 지분”이라 한다)을 의정부시 개발을 위해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서울시는 “환승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하여 의정부시의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한다.
 - 나. 의정부시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부지를 매수하고 환승주차장 개발사업을 주관한다.
- ③ 행정구역 조정(수락리버시티 1, 2단지)은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협약”이란 본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2. “본 사업”이란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협약 당사자”라 함은 서울시, 노원구와 의정부시를 말한다.
4. “협약 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이전사업”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기준 이자율”이라 함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5항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6. “부지 소유자”라 함은 “면허시험장” 부지의 소유자로 서울시, 노원구,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유 지분의 관리청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2호,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8. “서면”이라 함은 협약당사자의 공식 의사표현으로서 대표자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의미하며, 협약당사자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9. “지원 금액”이라 함은 서울시·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해 제1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제3조(지원의 내용) 서울시·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정부시에 지원한다.

1.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추진을 위해 제1조제2항제2호의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금 500억 원으로 한다.
 - 가. 제1항의 “지원 금액” 중 서울시는 350억 원, 노원구는 150억 원을 분담하며, 의정부시는 “부지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요구할 수 없다.
2.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개발에 필요한 서울시 “환승 주차장 지분”을 의정부시에 매각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시기)

- ① “이전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금액”의 30%인 150억 원 중 100억 원은 서울시가, 50억 원은 노원구가 의정부시에 지원한다.
- ② 서울시·노원구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지원금 외 “지원 금액”의 20%는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여분 50%는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정부시에 지원한다.
- ③ 서울시는 의정부시가 환승주차장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승주차장 지분”의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절차 이행 완료 후 매각한다.

제3장 상생 협력

제5조(상호 의무)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본 협약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등 제반 절차를 상호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협약 당사자”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지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한다.
2. 서울시는 의정부시가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의정부시에 “환승 주차장 지분”을 매각한다. 의정부시는 환승주차장의 기능유지가 매각의 조건임을 인지하고 향후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한다.
3. 의정부시는 주민편익시설 조성 사업을 서울시·노원구에 성실히 공개하고, 서울시·노원구는 조성비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
4. 서울시·노원구는 의회동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의 유관기관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5. 제1조 제3항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상호 협력한다.

제4장 위험의 부담

제6조(위험배분의 원칙)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의정부시의 귀책사유) 다음의 사유들은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이전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행정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는 경우
2.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 또는 지체하는 경우
3. “본 협약” 체결 이후에 의정부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사업” 무산 및 주민, 의회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인해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본 협약” 체결 이후에 제3조에서 정한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금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단, “지원 금액” 외 추가금액을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원 금액”의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서울시·노원구의 귀책사유) 다음의 사유들은 서울시·노원구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제3조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작은 규모로 지원 금액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제4조에서 정한 지원의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지원 금액”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본 협약” 체결 이후에 서울시·노원구 정책 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이전사업”이 무산될 경우
4. “이전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3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9조(불가항력 사유) 다음의 사유들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화재, 문화재 발굴, 국가신용도의 급격한 변동,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본 협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고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방지하거나 피할 수도 없으며 당사자가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외부적 사태의 발생
2. 기타 제1호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제5장 협약의 종료

제10조(협약의 종료) “본 협약”은 “이전사업”의 완료에 의하여 종료된다. 단, 중도 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경우에는 제11조에 의한다.

제1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서울시·노원구에 의한 해지: 제7조에 정한 의정부시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노원구는 본조에 따라 의정부시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의정부시에 의한 해지: 제8조에 정한 서울시·노원구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정부시는 본조에 따라 서울시·노원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제9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본조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⑤ 본조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는 9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해지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통지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제12조(해지시 효과)

- ① 협약 당사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를 통해 기 지급된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정한다.
 1.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 중 기지급금(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기준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 포함한다)을 서울시·노원구에 반환한다.
 2. 제8조에 따른 서울시·노원구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원 금액” 중 기지급금은 의정부시에 귀속된다.
 3. 제9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의정부시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 중 기지급금액(지급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기준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 제외한다)을 서울시·노원구에 반환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3조의 절차에 따른다.
- ③ 의정부시는 본조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해지일부터 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다)을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익년도 1월 31일까지 서울시·노원구에 지급한다.

제6장 분쟁의 해결

제13조(분쟁의 해결)

-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협약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한다.
- ③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 중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제7장 기타 사항

제14조(지연 이자) “본 협약”상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른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준 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 및 동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협약 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② 본 협약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협약 당사자” 간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공증하도록 한다.
- ③ 당사자간 합의 하에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